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69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4월 28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4년 3월 31일 김규남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620호)과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643호)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장기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헌신을 일군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병역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여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 추가함
(안 제5조제1항제18호 신설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(3월~10월) :”을 “(3월~10월)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(11월~다음해 2월) :”을 “(11월~다음해 2월):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

제17조제1호 중 “기본시설 :”을 “기본시설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부속시설 :”을 “부속시설: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절기(3월~10월) :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, 토·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. 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) 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·③ (생략)	제3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----- ----- ----. 1. ----(3월~10월): 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(11월~다음해 2월): 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1. ~ 17. (생략) <u><신설></u> 18. · 19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7. (현행과 같음) 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19. · 20. (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대관범위)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7조(대관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<u>기본시설</u> : 전시실	1. <u>기본시설</u> : -----
2. <u>부속시설</u> : 강당, 세미나실, 시청각실, 그 밖에 옥내·외의 공간	2. <u>부속시설</u> : ----- ----- ---